

#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28.

복지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박정환 의원 등 6명
- 발의일자: 2024. 11. 6.(수)
- 회부일자: 2024. 11. 6.(수)
- 상정 및 의결: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2024. 11. 28.)

##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1.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함(안 제4조)
- 다.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아.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4.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4조의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이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N번방을 비롯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유포, 촬영, 합성 등으로 인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5년간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7,463건에서 2022년 17,702건으로 늘었고, 이는 전체 성범죄의 42.72%를 차지하는 등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범죄	32,104	32,029	30,105	32,898	41,433
디지털성범죄 비중	23.25%	22.94%	24.02%	35.21%	42.72%
디지털성범죄	7,463	7,347	7,232	11,583	17,7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6,085	5,893	5,005	5,686	6,082
통신매체이용음란	1,378	1,454	2,070	5,079	10,605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	-	32	260	171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	-	125	558	844

출처 : 검찰청, 해당년도 「범죄분석」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 피해 정도가 광범위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달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별도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전부와 9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약: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